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67호서식] <개정 2018. 3. 21.>

농·어민확인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적사항	① 성명(대표자 성명)	② 주민등록번호
	③ 법인명	④ 법인등록번호
	⑤ 주소 (전화번호:)	
사업현황	⑥ 소재지	
	⑦ 업종 [ ] 농 업 [ ] 축산업 [ ] 어 업	⑧ 사업자등록번호
	⑨ 영농·사육·영어 규모	

농업용·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수입내역

제 품 명	규 격	수 량	수입금액(천원)	비 고
합 계				

상기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106조제17항에 따른 농·어민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업·수산업 협동조합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
작성방법

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업용·축산업용·어업용 기자재를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민·어민은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.
2. 농·어민확인서는 기자재의 수입신고시에 첨부서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6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농업·수산업 협동조합장 직인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